



제305회 정례회

2011.12.01.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7일

○ 회부일자 : 2011년 11월 10일

3. 제안이유

201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취득

(단위 : m<sup>2</sup>, 천원)

| 기관명     | 구 분 | 사 업 명         | 수 량      | 금 액        |
|---------|-----|---------------|----------|------------|
| 충청북도교육청 | 건물  | 대소금왕고 교사 신축   | 9,256.30 | 20,282,076 |
|         | 건물  | 충북체고 이전 교사 신축 | 5,257.00 | 24,641,211 |
| 청주교육지원청 | 건물  | 죽림초 교사 증축     | 1,203.78 | 2,793,268  |

| 기관명     | 구 분 | 사 업 명           | 수 량       | 금 액        |
|---------|-----|-----------------|-----------|------------|
| 음성교육지원청 | 토지  | 가칭) 본성초 설립부지 취득 | 13,245.00 | 780,000    |
|         | 토지  | 가칭) 본성중 설립부지 취득 | 14,479.00 | 840,000    |
| 합 계     |     | 5건              | 43,441,08 | 49,336,558 |

### ① 대소금왕고등학교 교사 신축

- 신축위치 : 음성군 금왕읍 본대리 산 24번지 일원
- 신축면적 : 9,256.3㎡
- 신축금액 : 20,282,076천원
- 예산현황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 908,800천원(설계비) + 2012년도  
본예산 : 19,373,276천원, 합계 : 20,282,076천원
- 사     유 :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교사 신축

### ②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 신축위치 :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 105번지 일원
- 신축면적 : 5,257㎡
- 신축금액 : 24,641,211천원
- 예산현황 :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 2,041,800천원(설계비) + 2012년  
도 본예산 : 22,599,411천원, 합계 : 24,641,211천원
- 사     유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교사 신축

### ③ 죽림초등학교 교사 증축

- 증축위치 :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 293번지
- 증축면적 : 1,203.78㎡
- 증축금액 : 2,793,268천원
- 사     유 : 학급수 증가(유치원 2학급, 초등 8학급)에 따른 교사 증축

#### ④ 가칭) 본성초등학교 설립부지 취득

- 재산위치 :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2-1번지
- 취득면적 : 13,245m<sup>2</sup>
- 취득금액 : 780,000천원
- 사 유 : 진천음성 혁신도시내 유입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학교 신축

#### ⑤ 가칭) 본성중학교 설립부지 취득

- 재산위치 :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296번지
- 취득면적 : 14,479m<sup>2</sup>
- 취득금액 : 840,000천원
- 사 유 :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유입 학생수용시설을 위한 학교 신축

### 5. 검토의견

- 본 관리계획안은 음성지역의 학생 수 증가와 진천·음성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를 각 1개교씩 신설하고, 도심지역의 택지개발에 따른 학급 수 증가로 죽림초의 교사를 증축하며, 열악한 체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충북체육고등학교를 청주시내에서 진천 문백면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임.
- 사안별로 살펴보면, “대소금왕고등학교 교사 신축”은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2011. 5. 13.)에서 “대소금왕고등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의회결 하였으며, 또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설계비, 용역비 등으로 501,819천원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임.
  - ※ 2012년 본예산 편성액: 193억 7,327만 6천원(토목비, 교사 및 급식소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교사 신축” 또한 제300회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2011. 5. 13.)에서 이전 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1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설계비, 용역비 등으로 3,880,800천원이

반영되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임.

※ 2012년 본예산 편성액 : 225억 9,941만 1천원(토목비, 교사 및 급식소 건축비, 감리비, 부대비)

○ “죽림초등학교 교사 증축”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학구 내에 총 1,373세대의 공동주택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3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24학급 640명에서 2013년 34학급 9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 여건 마련 및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 “가칭)본성초, 본성중학교 설립부지 취득”은 진천·음성혁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음성군 맹동면 본성리 일원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500여세대가 입주예정이고, 이 지역 학생 수용을 위한 교사 신축은 꼭 필요한 것으로 설립부지 취득은 적절하다고 생각됨.

※ 2012년 본예산 편성액 : 28억 1,720만원(초·중 부지매입비, 설계비)

## 관 계 법 령 발 취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9.4.24]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